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511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1.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1. 3. 4. 접수 제30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8. 23.경 원고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2022. 1. 19. 기준 D이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원리금의 합계액은 21,270,617원 정도이다.

나. 원고는 2021.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411762호로 D에 대하여 미지급 신용카드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1. 28. 확정되었다.다. D은 2021. 3. 4.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21.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관련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2) 먼저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1. 3. 4.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같은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D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피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의 신용불량을 이유로 피고 지분 상당을 D에게 명의신탁해둔 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피고가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D의 다른 채무 존재 여부나 신용 및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기에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의 취득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21. 3. 4. 접수 제30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별지